

# WTO TBT 협정 해설

## 1. 기본개념

- TBT 주권 인정 + 무역 제한 효과 통제 (cf. SPS)
  -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
  -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

## 2. Technical Regulation의 기안, 채택, 적용 (2조) (1/2)

- MFN, NT
- not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 to trade
  - not be more trade restrictive than necessary
  - consider 과기정보, 생산(처리) 기술, 최종 사용목적 등
- TR not be maintained if 채택 목적, 환경 소멸 or  
if less trade restrictive manner

## 2. Technical Regulation의 기안, 채택, 적용 (2조) (2/2)

- 특별 사정없는 한 기존 국제 표준 활용
- 타국 교역 침해시 설명 의무, rebuttable presumption
- 국제 표준 기구 적극 참여
- 타국의 유사 TR 수용 적극 고려
- TR based on performance, not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
- 사전 고지, WTO 통보, 요청시 자료 제공, 의견 제출 시간 부여, (긴급 시 일부 생략 가능)
- 즉시 공표 및 시행전 합리적 기간 부여

### 3. TR 준수 심사 절차 (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) (5조)

- MFN, NT, 불필요한 교역 장애
- 심사 '절차' 준수 요건
  - completed as expeditiously as possible, MFN
  - 표준 소요기간 공표 및 이해관계자 통지  
신청 접수 즉시 개시 및 결과 통보 in a precise & complete manner
  - 과도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및 비밀 보장
  - 수수료 MFN, NT
  - 심사 장소 및 표본 not to cause unnecessary inconvenience
  - CAP for modified product shall be limited 필요 범위
  - 이의 제기 절차 구비
- 기존 국제 표준(전체 or 일부) 활용
- 국제 표준 기구 적극 참여
- 사전 고지, 당사자 통보, 요청시 자료 제공, 의견 제출 시간 부여, (긴급 시 일부 생략 가능)
- 즉시 공표 및 시행전 합리적 기간 부여

#### 4. 상호인증 (6조)

- 타국 CAP가 요건 준수시, 자국 결과와 상이하더라도 수용
  - prior consultation encouraged
- 상호 인증 협정 체결 권장
- 국제, 지역 conformity assessment body 참여 권장

#### 5. 기타

- TR & CAP of Local government bodies (3, 7, 8조)
- enquiry point
- technical assistance & 개도국 특별 대우
- dispute settlement, technical expert group 설치 가능

Annex 1 : 용어 정의

Annex 2 : technical expert group

Annex 3 : Code of Good Practice for 표준기구

- MFN, NT,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
- 국제 표준 활용 및 국제기구 활동 참가
- 중복 회피
- 주기적(최소 매 6개월) 표준 제정 동향 공지
- 최소 6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 부여
- 자료 제공 및 표준 채택시 즉시 공표 등